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지영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559
----------	-------

발의연월일 : 2026. 9. 23.

발 의 자 : 서지영·서천호·박성훈
정성국·이종배·김미애
김대식·이헌승·조승환
이인선·김성원·최수진
강승규·구자근·백종현
박수민·이진숙·조경태
의원(18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교육감은 유치원 및 학교 주변 일정 거리 범위 안의 지역을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고시하여야 하며,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는 청소년의 안전을 위하여 청소년유해업소 운영 등의 행위가 금지됨.

그런데 유치원 및 학교 주변 지역은 원룸이나 빌라가 밀집해 있어 사람들의 접근이 드문 외진 곳이 많고 안전사고나 범죄 예방에 취약한 편인데, 이러한 지역에 성범죄 경력자가 거주하는 경우가 많아 아동·청소년이 약취 유인 등을 통한 성범죄에 쉽게 노출될 우려가 있음.

이에 법원으로 하여금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는 자에

대하여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거주할 수 없도록 하는 거주제한 명령을 하도록 함으로써 교육환경보호구역의 안전을 더욱 강화하고 아동·청소년을 성범죄 위험으로부터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려는 것임 (안 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4까지 신설 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8조의2(교육환경보호구역 거주제한 명령 등) ① 법원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일정기간(이하 “거주제한 기간”이라 한다) 동안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설정·고시된 교육환경보호구역(이하 “교육환경보호구역”이라 한다) 내에 거주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거주제한 명령”이라 한다)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또는 그 밖에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의 거주를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거주제한 기간은 1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법원은 제1항에 따라 거주제한 명령을 선고하려는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심리학자, 사회복지학자 또는 그 밖에 관련 전

문가로부터 거주제한 명령 대상자의 재범 위험성 등에 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지역에서 거주제한 기간 중에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거주하고 있는 자가 있는 경우 기한을 정하여 해당 거주지에서 퇴거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기한까지 퇴거하지 아니하면 제58조의3에 따라 강제퇴거 조치를 한다는 뜻을 문서로 경고(戒告)하여야 한다.

⑤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성범죄로 거주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자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거주하고 있는지를 직접 또는 관계 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점검·확인하여야 한다.

⑥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점검·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⑦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점검·확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⑧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점검·확인한 결과 거주제한 기간 중에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거주하고 있는 자가 있으면 해당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4항에 따른 퇴거명령을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강제퇴거 조치 요구의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8조의3(퇴거명령 미이행에 대한 강제퇴거 조치)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58조의2제4항에 따른 퇴거명령을 받은 자가 기한까지 퇴거하지 않은 경우 강제로 퇴거하게 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강제퇴거 조치의 사유와 시기를 명확하게 적어 조치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강제퇴거 조치를 위하여 현장에 파견되는 집행책임자는 그가 집행책임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보여 주어야 한다.

제58조의4(퇴거명령 등에 대한 이의신청) 제58조의2제4항에 따른 퇴거명령 또는 제58조의3에 따른 강제퇴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65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58조의2제1항에 따라 성범죄로 거주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자가 거주제한 기간 중에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거주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거주제한 명령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의2제3항제5호나목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58조의2(교육환경보호구역 거주제한 명령 등) ① 법원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일정기간(이하 “거주제한 기간”이라 한다) 동안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설정·고시된 교육환경보호구역(이하 “교육환경보호구역”이라 한다) 내에 거주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거주제한 명령”이라 한다)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또는 그 밖에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의 거주를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거주제한 기간은 1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법원은 제1항에 따라 거주제한 명령을 선고하려는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심리학자, 사회복지학자 또는 그 밖에 관련 전문가로부터 거주제한 명령 대상자의 재범 위험성 등에 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지역에서 거주제한 기간 중에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에 거주하고 있는 자가 있는 경우 기한을 정하여 해당 거주지에서 퇴거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기한까지 퇴거하지 아니하면 제58조의3에 따라 강제퇴거 조치를 한다는 뜻을 문서로 경고(戒告)하여야 한다.

⑤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성범죄로 거주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자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거주하고 있는지를 직접 또는 관계 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점검·확인하여야 한다.

⑥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점검·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⑦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점검·확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⑧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점검·확인한 결과 거주제한 기간 중에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거주하고 있는 자가 있으면 해당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

<신 설>

군수·구청장에게 제4항에 따른 퇴거명령을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강제퇴거 조치 요구의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8조의3(퇴거명령 미이행에 대한 강제퇴거 조치)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58조의2제4항에 따른 퇴거명령을 받은 자가 기한까지 퇴거하지 않은 경우 강제로 퇴거하게 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강제퇴거 조치의 사유와 시기를 명확하게 적어 조치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강제퇴거 조치를 위하여 현장에 파견되는 집행책임자는 그가 집행책임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보여 주어야 한다.

<신 설>

제58조의4(퇴거명령 등에 대한 이의신청) 제58조의2제4항에

제65조(벌칙) ① ~ ④ (생략) <u><신설></u> ⑤ (생략)	<u>따른 퇴거명령 또는 제58조의3에 따른 강제퇴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u> 제65조(벌칙) ① ~ ④ (현행과 같음) <u>⑤ 제58조의2제1항에 따라 성범죄로 거주제한 명령을 선고 받은 자가 거주제한 기간 중에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거주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u> <u>⑥ (현행 제5항과 같음)</u>
---	---